

보도 일시	2022. 10. 18.(화) 06:00 2022. 10. 18.(화) 석간	배포 일시	2022. 10. 18.(화) 06:00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	책임자	과 장 오영민 (044-202-8804)
		담당자	사무관 이찬웅 (044-202-8808) 주무관 정상은 (044-202-8809)

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개정안 공포(10.18.)

-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등 -

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개정안을 10월 18일(화) 공포했다.

10월 1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(시행일: '22.10.18.) ☞ 화학사고예방과(044-202-8969)

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·유지·보수 작업 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조치로써,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하는 등 작업 중 소화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*을 마련하였다.

- * △ 관계자 사전지정 및 출입기록 작성관리 △ 출입근로자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교육 실시
- △ 소화용기 및 배관밸브 교체 작업시 공기호흡기(송기마스크) 지급 착용
- △ 소화설비 작동 관련 전기,배관 등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부여

또한,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감지·경보장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·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,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방출 즉시 인근 근로자들이 인식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* 방호구역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(또는 비상구)까지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 소화용기 100개 이상(45kg 용기 기준)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

이에 따라, 현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4.10.18.까지 해당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.